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51419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1 주식회사 C은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16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6,659,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26,659,1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1) 2016. 6. 6. G 주식회사와 차량 취득원가 78,335,470원, 월 리스료 1,675,400원, 원리금균등상환 48개월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2) 2017. 12. 27. H 주식회사와 원리금 165,700,000원, 원리금균등상환 72개월(2개월 거치)로 정하여 자동차 근저당권부 금융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E은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위 각 여신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5. 28. G 주식회사의 위 (1) 채권을, 2021. 5. 31. H 주식회사의 위 (2) 채권을 각각 양수하였고, 2020. 6. 15. 위 (1) 채권에 대하여, 2021. 6. 17. 위 (2) 채권에 대하여 각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F과 E에게 내용증명으로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1) 채권에 대하여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09630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21. 6. 25.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87,577원 및 그 중 22,270,580원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2) 채권에 대하여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4078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64,795,882원 및 위 돈 중 52,500,99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판결과 지급명령은 모두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E은 2018. 8. 30.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야를 매도하고, 2018. 9. 1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165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9. 26. 피고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8.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2021. 3. 13.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2021.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 피고 D :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판단(자백간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2018. 8. 30.자 별지 1목록 기재 각 임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은 E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의 목적물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6. 7. 25. J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7. 5. 16. D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은 145,840,830원(= J 95,840,830원 + D 5,000만 원)인 사실, (2) 이 사건 매매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실거래사례를 보면, 저층인 2층이 2018. 11. 27., 1억 1,500만 원에 거래되고, 고층인 17층이 2018. 5. 21. 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어 원고가 제출한 K시세 자료만으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3층)의 가액이 위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별지